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52호로 2025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소집수당 지급 근거 신설(안 제9조)
- 나.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(안 별지 제1호서식)
- 다. 제19조제5항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설(안 별지 제2호서식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2026년 예산 반영 예정
(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- 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2) 인권영향평가: 의견반영 보완완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할 사항 없음
- 4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5. 5. 1. ~ 5. 2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영등포구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본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총 350명(18개 동별 구성)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 관련 전(全)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단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6조(해임 및 해촉)은 현행 조례에서 “단원”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해촉(해임) 규정을 “단장”에게까지 확대함.
 - 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사망, 소재불명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

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해임하여 직무상 공백¹⁾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며,

- 단장의 책임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,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60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임규정 신설은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9조(소집 등)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소집수당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신설함.

-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근거하여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

- 같은 조 제3항에서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, 수당은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‘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’ 단가로 규정함.

1) 단장의 직무대행으로 부단장 제도가 있으나, 단장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일시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국한됨.

서울시 타 자치구 소집수당 현황(4월 기준)

소집수당	자치구
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(10,579원)	8개 (종로, 성북, 관악, 도봉, 동대문, 송파, 마포, 서초)
최저임금 단가 (10,030원)	2개 (양천, 강남)
미 정	14개 (노원, 중랑, 구로, 강동, 금천, 성동, 광진, 은평, 강서, 강북, 용산, 동작, 중, 서대문)

-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용어(장제→장례)를 정비하고,
 - 행정안전부 「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²⁾」(2024. 2. 20.)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서(안 별지 제1호서식) 제출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‘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 또는 ‘전자본인서명확인서’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,
 - 유족대표자 선정서(안 별지 제2호서식)를 신설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의 해임규정 및 소집수당 신설 등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방재단의 단장은 방재단 대표 및 업무 총괄, 방재단원 지휘

2) 불필요한 인감증명사무 정비 (2,145건 / 2,608건, 전체 82%)

< 요구사무 정비기준 >

- ▶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(준치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)
- ▶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·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
- ▶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,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표등·초본 등으로 대체
- ▶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가능토록 근거규정 정비

및 소집, 활동계획서 작성 등 방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, 단장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하고, 단장의 청렴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,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집수당을 신설하였고, 수당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,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60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장” 이라 한다)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(互選)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6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>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16.>